

의 안 번호	2434	[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금 결산 승인의 건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2.(목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총괄 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 [㉠]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[㉡] = [㉠] + [㉢]
	계 [㉣] = [㉡] - [㉢]	조 성 액 [㉡]	사 용 액 [㉢]	
48,446,360	167,464,720	167,464,720	0	215,911,080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2조

5. 검토의견: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울산광역시 중구 고행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- 제22조(기금의 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
 2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서류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